

제266회 영등포구의회  
2025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 
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임현호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1. 21.

행 정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경 과

의안 제639호로 2025년 11월 7일 임현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 
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·조기검진·건강관리·인식개선에 관한 종합적  
추진체계를 마련하고,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 
통해 구민이 일상 속에서 질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건강 환경을  
조성하려는 것임. 또한, 금연, 운동, 영양개선 등 생활습관 개선사업을  
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을 예방하고,  
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증을 줄임으로써 구민의 건강수명을 연장  
하며 예방 중심의 건강도시 영등포를 실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추진계획의 수립 (안 제4조)
- 라. 실태조사(안 제5조)
- 마. 지원사업 (안 제6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5.11.7.~11.13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·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### ○ 주요내용

조	제 명	내 용
제1조	<b>목적</b>	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
제2조	<b>정의</b>	심뇌혈관질환, 심뇌혈관질환관리 용어 정의
제3조	<b>책무</b>	구민의 심뇌혈관질환관리등 건강 관리를 위한 정책 이행
제4조	<b>추진계획의 수립</b>	<b>매년 추진계획 수립·시행</b> -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
제5조	<b>실태조사</b>	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- 실태조사: 연구기관에 의뢰 가능
제6조	<b>지원사업</b>	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가능
제7조	<b>교육</b>	구민 대상 교육 실시 가능
제8조	<b>홍보</b>	간행물, 동영상, 캠페인 등
제9조	<b>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사업</b>	지역주민 대상 검사 실시로 조기발견사업 추진 가능
제10조	<b>등록관리</b>	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
제11조	<b>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</b>	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가능
제12조	<b>비밀누설의 금지</b>	건강관리 사업 종사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
제13조	<b>포상</b>	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 기여 시 포상 가능
제14조	<b>시행규칙</b>	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

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, 정의,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추진계획 수립 의무, 실태조사, 지원사업, 교육, 홍보의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-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역 주민 대상 검사로 조기 발견 사업을 추진 후 등록관리,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규정으로 지속적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비밀누설의 금지, 포상,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음.

## ○ 검토 결과

- “심뇌혈관질환”이란 심장(心)과 뇌(腦)의 혈관에 생기는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로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며 크게 심혈관질환(심부전, 부정맥 등)과 뇌혈관질환(뇌졸중, 뇌출혈 등)으로 구분됨.
- 통계청의 2024년 사망 원인 순위를 살펴보아도 2위와 4위에 각각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차지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며, 발병 시 언어장애, 인지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·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임.
- 이러한 배경 하에 상위법인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<sup>1)</sup>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

---

1)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“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

사업을 시행·지원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제16조<sup>2)</sup>에서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위임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더불어 본 조례 제정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추진계획, 실태조사, 건강관리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 구민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·행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, 전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5곳뿐이며,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여겨짐.

번호	자치단체	법규명	공포일자
1	경기도	경기도 심·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	'18.01.11.
2	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'23.10.11.
3	충주시	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'24.09.27.
4	제천시	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'24.10.11.
5	거제시	거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'25.03.20.

---

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## 2) 제16조(비용의 지원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인력·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
2.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
3.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
4.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
5.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

# 참 고 자 료

##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심뇌혈관질환”이란 심혈관질환,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.
  - 가.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
  - 나. 심장정지
  - 다.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
  - 라. 고혈압
  - 마. 당뇨병
  - 바. 이상지질혈증
  - 사. 삍제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“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6조(비용의 지원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